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 포함)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포함)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불수리 요건으로 추가함(안 제7조제3항제3호).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대주주 포함),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함(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10항 신설).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3 신설).

II. 검토의견: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제한을 고려하여 외국법률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안 제7조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단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심사할 범죄전력의 범위를 현행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그 판단기준이 되는 관련 법률에 다양한 경제·금융 범죄 관련 법률을 추가하는 것임. 이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자의 범죄경력 심사를 강화하여 가상자산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²⁾

다만, 개정안은 대주주가 외국의 경제·금융 관련 법률뿐 아니라

1) FATF 권고사항15 주석서 3항, Interpretative Note to Recommendation 15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중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간 사업신고가 제한되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 논의를 토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내 금융 관련 법률의 대주주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국내법” 위반을 전제로 하고, 외국법률을 포함하더라도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 등으로 범위를 좁혀 규정하고 있음. 예컨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은 외국법 위반을 결격사유로 두더라도 금융 범죄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³⁾

둘째, 외국의 법체계는 매우 상이하므로 모든 외국법 위반을 결격사유로 포함할 경우 국내에서는 범죄가 아닌 행위가 외국법상 처벌되는 사례가 포함될 여지가 있고, 가상자산사업의 성질과 무관한 행위까지 신고 불수리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셋째,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과 비교하면, 해당 제도는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시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 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두고 있으나,⁴⁾ 개정안은 곧바로 사업신고 불수리로 귀결되어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 8. (생략)

② ~ ③ (생략)

4)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가상자산사업 영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보다 중한 제재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가 외국의 모든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수리 거부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자의 직업수행에 대한 과도한 제한⁵⁾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 불수리 사유인 대주주 범죄전력을 금융 관련 법률 및 이에 준하는 법률에 한정할 수 있도록,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 문구를 “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등을 한 주식(제2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 및 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헌법재판소 2025. 8. 21. 선고 2020헌마1491 전원재판부 결정]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닌 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제한의 정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7조(신고) ① ~ ② (생략)	제7조(신고) ① ~ ② (생략)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 ----- -.
1. 2. (생략)	1. 2. (생략)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u>기타 다른 법률(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u>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3. ----- ----- ----- ----- ----- ----- ----- ----- ----- ----- ----- 기타 다른 <u>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u> ----- ----- ----- -----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4. ~ 8. (생 략) ④ ~ ⑩ (생 략)	----- 4. ~ 8. (생 략) ④ ~ ⑩ (생 략)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